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고 등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2026. 1.

고 용 노 동 부

- 순 서 -

I. 일반회계	1
(1) 기타재산이자수입	3
(2) 과태료	4
(3) 징계부과금	5
(4) 과징금	6
(5) 위약금	8
(6) 가산금	9
(7) 기타경상이전수입	10
(8) 면허료 및 수수료	11
(9) 기타잡수입	12
II.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
(1) 기타재산수입	15
(2) 기타경상이전수입	16
III.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
(1) 기타재산이자수입	19
(2) 과징금	20
(3) 기타경상이전수입	21
(4) 기타재산이자수입	22
(5) 기타경상이전수입	23
IV.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4
: 해당없음	
V. 고용보험기금	29
(1) 고용주부담금	31
(2) 피고용자분담금	38
(3) 건물대여료	44
(4) 기타민간이자수입	45
(5) 기타재산이자수입	47
(6) 기타재산이자외수입	48
(7) 가산금	49
(8) 기타경상이전수입	50
(9) 잡수입	53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54
(1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56
(1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7
(13) 일반회계전입금	58
(14) 기금예수금	59
(15) 기금예탁이자수입	60

VI.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

(1) 고용주부담금	65
(2) 피고용자분담금	67
(3) 토지대여료	69
(4) 건물대여료	71
(5) 기타민간이자수입	73
(6) 기타재산이자수입	74
(7) 기타재산이자외수입	75
(8) 별금및과료(과징금)	76
(9) 가산금(가산금)	77
(10) 기타경상이전수입	78
(11) 기타잡수입	80
(12)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81
(13)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2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3
(15) 일반회계전입금	84
(16) 기금예탁원금회수	85
(17) 기금예탁이자수입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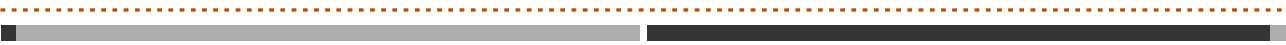
VII.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9

(1) 기타재산이자수입	91
(2) 기타재산이자외수입	92
(3) 가산금	93
(4) 법정부담금	94
(5) 기타경상이전수입	96
(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97
(7) 한국은행예치금회수	99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00
(9) 기금예탁원금회수	101
(10) 기금예탁이자수입	102

VIII. 임금채권보장기금	103
(1) 기타민간이자수입	105
(2) 기타재산이자수입	106
(3)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07
(4) 가산금	108
(5) 법정부담금	110
(6) 기타경상이전수입	112
(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14
(8)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15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6
(10) 일반회계전입금	117
(11) 기금예탁원금회수	118
(12) 기금예수금	119
(13) 기금예탁이자수입	120
IX. 근로복지진흥기금	121
(1) 기타민간이자수입	123
(2) 기타재산이자수입	124
(3) 기타경상이전수입	125
(4) 기타잡수입	126
(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27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8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9
(8) 기금전입금	130
(9) 기금예탁원금회수	131
(10) 기금예탁이자수입	132
(11) 기타재산이자수입	133
(12) 기타경상이전수입	134
(13) 면허료및수수료	135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6
(15) 계정간전입금	137
(16) 기타재산이자수입	138
(17)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9
(1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40
(19) 기금예탁원금회수	141
(20) 기금예탁이자수입	142



I . 일반회계



(1)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4,548	3,366	3,366	5,192	5,192	1,826	54.2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관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2. 세입 개요

-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

(예: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3,165	7,864	4,548	5,960	-

(2) 과태료
54-56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과태료	46,677	50,243	50,243	49,255	49,255	△ 988	△ 2.0

1. 법적 근거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고용보험법 제118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등 37개 노동관계법령
※ 참고1: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노동관계법
- **(이행강제금)**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참고2: 이행강제금 제도 개요

2. 세입 개요

- **(과태료)** 노동관계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
-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수입
부과금액 : 1회 3천만원 한도로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2년까지 부과 가능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54,534	46,555	46,677	46,201	-

(3) 징계부과금
54-564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징계부과금	22	170	170	170	170	-	-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세입 개요

-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 등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취득 및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23	109	22	47	-

(4) 과징금
54-565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과징금	2,385	3,600	3,600	3,803	3,803	203	5.6

1.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및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등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들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하는 기관 등에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부정청구를 한 경우에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수령, 목적과 다른 용도의 보조금 사용의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4,682	4,343	2,385	2,954	-

(5) 위약금
57-57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위약금	1	10	10	10	10	-	-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6조(지체상금),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 법 제26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2. 세입 개요

- 연구용역, 물품 등의 납품지연,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3	0	1	0	-

(6) 가산금
58-58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가산금	350	264	264	271	271	7	2.7

1.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 ① 행정청은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3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60개월 한도로 부과
-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체납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금으로 징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21	241	350	266	-

(7)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115,157	267,594	267,594	267,594	267,594	-	-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7조(수입금의 직접 사용 금지 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및 제14조(반환명령에 따른 징수절차)
 -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
 -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포함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관련*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 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2. 세입 개요

-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출연금,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반환금, 고용센터 및 청사 전세보증금 반납금, 급여·수당 등 과지급금 회수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438,558	256,537	115,157	64,111	-

(8)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면허료 및 수수료	7	11	11	11	11	-	-

1.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입 개요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1	8	7	9	-

(9) 기타잡수입
69-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219	139	139	139	139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2. 세입 개요

-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예: 폐휴지 매각대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77	22	219	109	-

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기타재산수입
54-54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수입	2	0	0	0	0	0	0

1. 법적 근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세입 개요

- 진폐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7	8	2	5	-

(2)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81	0	0	0	0	0	0

1. 법적 근거

- 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연체금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의 납부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9년 이후 사업주부담금 징수제도 폐지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진폐위로금 등에 대한 부정·착오 지급시 부당이득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37	32	81	88	-

Ⅲ.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1,908	851	851	1,303	1,303	452	53.1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관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 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2. 세입 개요

-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예: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006	996	1,908	1,665	-

(2) 과징금
56 - 56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과징금	81	30	30	56	56	26	86.7

1. 법적 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부정청구를 한 경우에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수령, 목적과 다른 용도의 보조금 사용의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4	83	81	51	-

(3)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36,222	18,412	18,412	30,869	30,869	12,457	67.7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7조(수입금의 직접 사용 금지 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및 제14조(반환명령에 따른 징수절차)
 -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
 -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포함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관련*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 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2. 세입 개요

-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출연금,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반환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34,105	22,281	36,222	26,650	-

(4)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수입	21	24	24	23	23	△1	△4.2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관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 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2. 세입 개요

-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예: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42	5	21	4	-

(5)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4,875	2,505	2,505	2,632	2,632	127	5.1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7조(수입금의 직접 사용 금지 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및 제14조(반환명령에 따른 징수절차)
 -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
 -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포함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관련*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 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2. 세입 개요

-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출연금,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반환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432	5,488	4,875	949	-

IV.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해당없음

V. 고용보험기금

(1) 고용주부담금
38-38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주부담금	11,116,411	12,494,655	12,494,655	12,884,258	12,884,258	389,603	3.1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6. 10.>
- ④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⑦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6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48조의3제6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 ⑤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 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⑫ 자영업자의 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1.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 처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7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정산보험료, 이월보험료)
- (개산보험료-건설·별목업)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 신고 및 납부
- (월별보험료-건설·별목업 외 사업)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매월 부과·고지 및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확정보험료-건설·별목업)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개산보험료와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
- (정산보험료-건설·별목업 외 사업)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한 전년도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월별보험료와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
- (이월보험료) 전년도 말일까지 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정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로 이월하여 징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2	'23	'24	'25	'26
수납액	9,657,801	10,853,348	11,116,411	11,537,698	-

(2) 피고용자분담금
38-382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피고용자분담금	7,145,444	8,112,594	8,112,594	8,381,538	8,381,538	268,944	3.3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6. 10.>
- ④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⑦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6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부담비율은 제외한다)·제4항제2호(보험료의 부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48조의3제6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 ⑤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정산보험료, 이월보험료)
 - (개산보험료-건설·별목업)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 신고 및 납부
 - (월별보험료-건설·별목업 외 사업)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매월 부과·고지 및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확정보험료-건설·별목업)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 개산보험료와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
 - (정산보험료-건설·별목업 외 사업)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한 전년도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월별보험료와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징수
 - (이월보험료) 전년도 말일까지 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정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로 이월하여 징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2	'23	'24	'25	'26
수납액	6,061,092	6,962,379	7,145,444	7,426,537	-

(3) 건물대여료
51-512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건물대여료	353	347	347	347	347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에 입주하여 유상 사용 대여료 수입 발생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는 '12.3월부터 구미고용센터 청사 일부 사용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 입주하여 유상 사용 대여료 수입 발생
 - *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13. 9월부터 성남고용센터 청사 일부 사용
- 경상남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김해 등 6개소)에 입주하여 유상 사용 대여료 수입 발생
 - * 경상남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24.3월~'26년말까지 외국인지원센터(총 6개소)사용 예정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57	145	353	358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1월말 현재 기준

(4)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민간이자 수입	1,456	1,500	1,500	1,500	1,500	-	-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고용보험기금 융자 및 대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871	1,661	1,456	1,101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1월말 현재 기준

(5)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수입	44,778	49,869	49,869	46,875	46,875	△2,994	△6.0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통화금융기관(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등), 단기자금 등으로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수입
- 국고보조금, firmbanking 자금 예치에 따라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57,042	49,879	44,778	31,079	-

※ 2026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1월말 현재 기준

(6)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외수입	216,699	308,730	308,730	308,730	204,385	△104,345	33.8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 운용 수입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수익증권 등 처분)에 따른 발생 수익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31,596	82,651	216,699	504,041	-

※ 2026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1월말 현재 기준

(7) 가산금
58-581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가산금	3,890	5,215	5,215	3,448	3,448	△1,767	△33.9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입 개요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10% 징수
 -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정기한 도과하여 확정신고를 했거나 하지 않은 경우 : 그 확정보험료 전액의 10%
 -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그 추가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
-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업장이 이후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금의 50%경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2	'23	'24	'25	'26
수납액	3,385	3,557	3,890	4,584	-

(8)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83,710	229,522	229,522	213,547	213,547	△15,975	△7.0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연체금: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함)하고,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함)
- 부정이득징수금: 지급당시 허위 사실을 기초로 지급된 실업급여 등 지원금을 회수
- 부당이득징수금: 지급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 기간 위반 등 사후요건 결함에 따른 회수금
 - 반환금 등 회수금: 보조금 반환금 등 회수금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된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48,501	188,373	183,710	156,797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1월말 현재 기준

(9) 잡수입
69-691/697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잡수입	10	90	90	90	90	-	-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입 개요

- 기타잡수입 : 파산채권, 배당금 등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압류, 감정평가, 매각 등의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41	18	10	369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1월말 현재 기준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108,818	104,294	104,294	104,294	104,294	-	-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고용보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00,600	98,927	108,818	86,139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1월말 현재 기준

(1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851

(단위: 백만원, %)

목 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77,583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 운용 또는 기타 지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전년도말 한국은행 국고계좌 잔액을 당해연도 수입으로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56,254	106,382	77,583	-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1월말 현재 기준

(1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 관예치금회수	2,768,763	5,738,688	5,738,688	5,738,688	4,290,526	△1,448,162	25.2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적립금) 운용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펀드 등)을 만기도래 또는 사업비 지출 등을 위해 환매하여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917,810	1,961,677	2,473,787	3,151,173	-

※ 2026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1월말 현재 기준

(13) 일반회계 전입금							
91-9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400,000	550,000	550,000	600,000	600,000	50,000	9.1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5조 (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2. 수입 개요

-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 모성보호 지원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300,000	300,000	400,000	550,000	-

(14) 기금예수금
94-94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수금	-	-	-	-	750,000	750,000	순증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 **고용보험법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 재원 확충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	-	-	-	-

(15)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이자 수입	-	-	-	-	30,000	30,000	순증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	-	-	-	-

VI.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 고용주부담금
38-38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고용주부담금	8,957,314	9,586,905	9,586,905	9,818,176	9,818,176	231,271	2.4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2. 수입 개요

- 산재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정산보험료, 이월보험료) 수입
- 개산보험료 : 건설 및 별목업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
- 월별보험료 : 건설 및 별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납부기한은 익월 10일)
- * 월평균보수 산정방식
 1. 전년도 10월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2.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 확정보험료 : 건설 및 별목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하고, 전년도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정산하여 추가 또는 반환
- 정산보험료 : 건설 및 별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고,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와 정산하여 추가 또는 반환
- 이월보험료 : 사업주가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정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연도로 이월하여 징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8,194,773	8,988,573	8,957,314	9,101,142	-

(2) 피고용자분담금
38-382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피고용자분담금	203,983	248,063	248,063	288,059	288,059	39,996	16.1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2. 수입 개요

- 산재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무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정산보험료, 이월보험료) 수입
 - 개산보험료 : 자진신고·납부제도에 해당하는 사업(건설업 및 별목업)으로서 해당연도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월별보험료 : 부과고지제도(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전 산업, 건설기계관리사업 포함)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노무제공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확정보험료 : 자진신고·납부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말일(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전년도 개산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징수하는 보험료
 - 정산보험료 : 부과고지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신고한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 이월보험료 : 사업주가 전년도 말일까지 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정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01,482	116,846	203,983	258,985	

(3) 토지대여료
51-51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토지대여료	680	725	725	1,120	1,120	395	54.5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2호 : 생략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적용한다.

2. 수입 개요

- 산재기금 자산으로 보유한 토지를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료 (일반회계 부담)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720	670	680	861	-

(4) 건물대여료
51-512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건물대여료	102	116	116	132	132	16	13.8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2호 : 생략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호 : 생략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2. 수입 개요

- 산재기금 자산(청사)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사 중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할 청사에 대한 임차료(일반회계 부담)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34	109	102	92	-

(5)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민간 이자수입	7,979	9,819	9,819	10,857	10,857	1,038	10.6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재예방활동지원) ①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 및 보수,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각종 용자사업(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용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 각 공단 장기 대여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5,662	6,891	7,979	9,238	-

(6)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안(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53,099	16,316	16,316	22,694	22,694	6,378	39.1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펌뱅크계좌 이자수입(보험급여 및 반환금 등의 지급을 위한 펌뱅크계좌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3,009	30,113	53,099	41,487	-

(7)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외수입	1,299,230	961,701	961,701	964,171	964,171	2,470	0.3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393,173	751,622	1,299,230	1,353,853	-

(8) 별금및과료(과징금)
56-565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과징금	235	12	12	12	12	0	-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거짓 또는 허위로 진단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 보험급여액의 1.5배
 - 거짓 또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 : 거짓 또는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된 진료비의 1.5배~3.0배
 - 그 밖에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 : 월평균 부당금액에 진료제한 월수를 곱한 금액의 2배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	-	235	30	

(9) 가산금(가산금)
58-58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가산금	7,676	6,871	6,871	6,634	6,634	△237	△3.4%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012. 2. 1. 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별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월부과고지사업장)의 가산금 징수제도가 폐지되어, 건설·별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의 확정보험료 추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2. 수입 개요

-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전액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100분의 10(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6,911	6,633	7,676	7,752	

(10)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02,473	116,271	116,271	110,975	110,975	△5,296	△4.6%

1. 법적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 ④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 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 처분 등) ①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연체금 :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1000분의 20을 넘지 못하며,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징수하되 1000분의 50을 넘지 못함.
- 급여징수금 :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징수,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징수(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구상금 : 제3자 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회수
-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압류, 감정평가, 매각 등의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징수
- 부당이득금 : 보험금의 부정·부당수급액의 회수(부당이득)
- 과오지급금 회수 등 : 과오지급금, 보조금 정산액등 반납 회수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95,446	105,035	102,473	116,701	-

(11) 기타잡수입
69-69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12,184	13,278	13,278	13,351	13,351	73	0.5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2. 수입 개요

- 근로복지공단 송달료 환급분, 공매입찰보증금, 구상금지연이자, 공탁금이자, 추심계좌이자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 수행 관련 수입(수수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1,172	10,758	12,184	10,826	-

(12)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180,861	225,720	225,720	270,068	270,068	44,348	19.6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산재기금 융자사업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수입
 - * 산재기금 융자금 및 장기대여금 : 산재예방시설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업점포지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37,935	153,922	180,861	208,353	-

(13)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
85-85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34,021	23,949	23,949	23,949	23,949	0	-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수입 개요

- 연도말 한국은행에 예치된 국고잔액 회수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4,551	38,479	34,021	42,165	-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안(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654,358	7,124,723	7,124,723	4,340,236	4,340,236	△2,784,487	△39.1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수익증권(채권형, 주식형, 단기자금 등)을 만기도래 또는 사업비 지출 등을 위해 환매하여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015,939	2,621,793	4,654,358	2,712,663	-

(15) 일반회계전입금
91-911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21,300	21,300	21,300	31,300	31,300	10,000	46.9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
- 산재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8,300	20,000	21,300	21,300	-

(16)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 원금회수	0	4,850,090	4,850,090	4,850,000	4,850,000	△90	0.0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한 금액을 만기도래에 따라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893,100	2,030,000	0	4,850,090	-

(17)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 이자수입	53,873	212,259	212,259	148,439	148,439	△ 63,820	△ 30.1%

1. 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기금 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49,796	83,636	53,873	166,977	-

VII.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수입	2,795	2,512	2,512	2,844	2,844	332	13.2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850	3,224	2,795	2,219	-

(2)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외수입	89,238	20,520	20,520	50,889	50,889	30,369	148.0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채신관서예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탁운용에 따른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39,108	24,320	89,238	141,262	-

(3) 가산금
58-58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가산금	974	1,262	1,262	1,359	1,359	97	7.7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제69조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132	964	974	1,597	-

(4) 법정부담금

59-59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법정부담금	895,365	917,709	917,709	1,012,286	1,012,286	94,577	10.3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69조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와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고용률(민간 3.1%, 공공 3.8%)에 미달하여 장애인(장애인공무원 포함)을 고용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763,688	829,580	895,365	886,222	-

(5)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19,161	14,884	14,884	20,189	20,189	5,305	35.6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제62조, 제69조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2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填)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액,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금 회수액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9,795	17,850	19,161	19,238	-

(6)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6,203	6,577	6,577	7,503	7,503	926	14.1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제69조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용자에 대한 원금 회수(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998	3,402	6,203	7,658	-

(7)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85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1,192	997	997	1,157	1,157	160	16.0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예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수입 개요

- 한국은행에 예치된 국고잔액 회수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151	788	1,192	781	-

(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669,526	499,109	499,109	697,898	697,898	198,789	39.8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제72조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수입 개요

-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된 여유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535,243	596,456	669,526	690,528	-

(9)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원금 회수	6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	-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예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550,000	600,000	600,000	600,000	-

(10)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이자 수입	19,925	19,366	19,366	17,929	17,929	△1,437	△7.4

1.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1,731	19,402	19,925	16,854	-

VIII. 임금채권보장기금

(1)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민간 이자수입	1,507	2,519	2,519	3,663	3,663	1,144	45.4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채불 임금등 및 생계비 용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채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용자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용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용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辦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용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
 - 채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적용금리: 신용 연 3.7%, 담보 연 2.2%)
 - 채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적용금리: 연 1.5%)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905	1,091	1,507	2,133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2)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4,051	4,720	4,720	2,859	2,859	△1,861	△39.4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주로 단기통합MMF) 및 공단 소송관련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799	3,096	4,051	3,494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3)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46,358	15,103	15,103	21,970	21,970	6,867	45.5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2. 수입 개요

-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주로 장기수익증권)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4,231	28,084	46,358	22,821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4) 가산금
58-58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가산금	137	153	153	132	132	△21	△13.7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概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辦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부담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

※ 부족액의 100분의 10(부담금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100분의 5)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20	115	137	137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5) 법정부담금

59-59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법정부담금	418,430	430,680	430,680	440,883	440,883	10,203	2.4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概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수입
- 보수총액의 0.2% 범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
 - ※ 사업주부담금 비율 : 0.8/1,000(2010~2015), 0.6/1,000(2016 ~ 2025), 0.9/1,000(2026 ~)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380,275	408,272	418,430	430,473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6)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62,587	198,797	198,797	170,716	170,716	△28,081	△14.1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概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사업주 변제금 회수: 대지급금 지급 후 당해 사업주로부터 대위변제금 회수
- 연체금 회수: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매일 체납된 부담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하고(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함),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매일 체납된 부담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함)
- 무료법률구조사업 법원회수금: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여 지원한 당해연도 또는 이전연도의 사업예산 중 소송의 승소 등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수된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58,880	152,402	162,587	183,891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민간 융자원금회수	27,188	73,759	73,759	73,759	73,759	0	0.0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채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채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융자금 원금 회수
 - 채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기별 분할상환
 - 채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6,112	20,797	27,188	34,660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8)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85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3,600	4,671	4,671	4,671	4,671	0	0.0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2. 수입 개요

- 전년도 결산 국고잔액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4,188	4,980	3,600	4,576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 관예치금회수	239,536	76,271	76,271	121,127	121,127	44,856	58.8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2. 수입 개요

- 전년도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05,822	252,987	239,536	165,299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10) 일반회계 전입금							
91-9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일반회계 전입금	82	82	82	82	82	0	0.0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변제금 회수,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등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0	82	82	82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11)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 원금회수	100,000	50,000	50,000	0	0	△50,000	△100.0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예탁기간 만료로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00,000	100,000	100,000	50,000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12) 기금예수금
94-94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수금	0	57,000	57,000	57,000	57,000	0	0.0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기금 운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	-	-	57,000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13)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 이자수입	2,681	472	472	0	0	△472	△100.0

1. 법적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063	3,316	2,681	472	-

※ 2025년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25년 12월말 현재 기준

IX. 근로복지진흥기금

(1)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민간 이자수입	4,134	4,864	4,864	4,254	4,254	△610	△12.5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용자) ④ 용자금의 범위, 용자 조건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제7조(용자 금리) ① 용자 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이미 용자받은 사람은 용자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2. 수입 개요

- 용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용자 이자에서 금융기관 수수료 공제한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4,320	4,307	4,134	3,423	0

(2)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2,372	4,242	4,242	5,199	5,199	957	22.6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여유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634	2,746	2,372	3,890	0

(3)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445	-	-	100	100	100	순증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근로복지기금 법인 해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 인도
- 기납부 법인세 환급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37	2,295	445	357	0

(4) 기타잡수입
69-691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3,430	3,715	3,715	3,344	3,344	△371	△10.0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3,112	3,401	3,430	3,504	0

(5)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75-754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민간 용자원금회수	179,021	174,725	174,725	150,816	150,816	△23,909	△13.7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용자) ④용자금의 범위, 용자 조건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제13조(용자 기간 및 상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및 소액생계비의 용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용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

2. 수입 개요

○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용자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33,956	151,860	179,021	177,091	0

(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8,209	1,000	1,000	1,000	1,000	-	-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1항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707	11,630	38,209	15,322	0

(7)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3,339	172,078	172,078	186,923	186,923	14,845	8.6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계정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94,718	100,408	43,339	95,800	0

(8) 기금전입금
91-913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제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전입금	63,513	61,699	61,699	60,628	60,628	△1,071	△1.7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입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

2. 수입 개요

-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수익금 중 법정 배분금을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
 - 근로복지진흥기금에 복권수익금 35% 중 5.310% 배분, 전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0% 내에서 가감조정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59,758	64,400	63,513	61,699	0

(9)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 원금회수	26,000	26,000	26,000	20,000	20,000	△6,000	△23.1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1. 그 밖의 수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기금 예탁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0	0	26,000	26,000	0

(10)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 이자수입	898	622	622	600	600	△22	△3.5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1. 그 밖의 수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0	269	898	556	687

(11)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101	31	31	31	31	-	-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기타 이자 수입
 - 여유자금 운용 결산 값에 대한 이자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7	36	101	422	0

* '22년부터 기타재산수입 목 폐지로 기타재산이자수입에 편성

(12)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8,683	12,223	12,223	8,272	8,272	△3,951	△32.3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 및 제88조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2. 수입 개요

- 신용보증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금 및 구상채권 회수 관련 소송비용 회수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8,373	7,760	8,683	10,076	0

(13) 면허료및수수료
65-651

<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면허료및수수료	6,906	9,357	9,357	9,450	9,450	93	1.0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 및 제88조

제24조(보증료) 공단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증료, 구상금, 지연이자

2. 수입 개요

- 신용보증 지원에 따른 보증료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0,862	10,766	6,906	5,734	0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000	18,111	18,111	2,012	2,012	△16,099	△88.9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1. 그 밖의 수입금

2. 수입 개요

- 전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2,800	0	1,000	17,300	0

(15) 계정간전입금
91-915

<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계정간전입금	35,352	31,215	57,887	40,172	40,172	8,957	28.7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92조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입금
 - 신용보증사업계정 수지 보전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타 계정 전입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입되는 법정 전입금의 배분을 위한 중소복지계정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10,700	20,200	35,352	57,887	0

(16)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근로복지진흥기금-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32	9	9	270	270	261	2,900.0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수입 개요

-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여유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308	491	32	3,909	0

※ '22년부터 기타재산수입 목 폐지로 기타재산이자수입에 편성

(17)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 근로복지진흥기금-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6,729	2	2	2	2	-	-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3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1. 그 밖의 수입금
 - 「고용정책기본법」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 ① 공단은 제34조제2항(실업대책사업의 근로복지공단 위탁실시)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 2. 제36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 3. 그 밖의 수입금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전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5,979	6,728	6,729	1,023	0

(1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 근로복지진흥기금-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3,835	20,986	20,986	7,632	7,632	△13,354	△63.6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3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1. 그 밖의 수입금
 - 「고용정책기본법」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조성)
 - ① 공단은 제34조제2항(실업대책사업의 근로복지공단 위탁실시)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 2. 제36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 3. 그 밖의 수입금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전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실업대책사업계정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36,935	37,329	13,835	21,737	0

(19)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 근로복지진흥기금-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 원금회수	24,000	24,000	24,000	40,000	40,000	16,000	66.7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1. 그 밖의 수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4.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기금 예탁 원금 회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0	0	24,000	24,000	0

(20)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 근로복지진흥기금-실업대책사업계정 >

(단위: 백만 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증감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예탁 이자수입	962	1,244	1,244	1,200	1,200	△44	△3.5

1. 법적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1. 그 밖의 수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납액	0	0	962	701	0